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172
------------	--------

제출년월일 : 2023.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및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나. ‘혁신교육’,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 ‘미래 교육’, ‘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다. 마포구-교육청 미래교육지구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라.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10. 5. ~ 10. 2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 원안동의
- 3)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
- 4)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자체 개선안 동의

해당 내용(현행)	자체 개선안	수정안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구청장이 위촉한다.</u>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 ----- <u>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 ----- <u>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

- 6)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8.): 원안의 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
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4. 그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마포구 교육 특화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래교육지구의 지정기간과 같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장
2.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서장 및 미래교육 담당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지구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대외협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기

업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학생” 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말한다.</u> <u>2.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u> 	<u>제2조(정의) -----.</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마포구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u> <u>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교</u>

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
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
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
다.

3.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란
교육감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
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
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마포구 관내의 학
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
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삭 제>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
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
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
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
하는 기구를 말한다.

<삭 제>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① -----
----- 미래교육
지구 사업계획-----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
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3.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4. 지역연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5. 지역특화 사업
6.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
행하는 미래교육지구 -----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
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4. 그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
-----.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마포구 교육 특화사업

<삭 제>

<삭 제>

<삭 제>

<p><u>7.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u>4. -----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u></p> <p>-----</p>
<p>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 ----- 미래교육지구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u></p> <p>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u>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u></p> <p>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래교육지구의 지정기간과 같다.</p>
<p><u>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u>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u></p>	
<p><u>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u></p>	
<p><u>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u><신설></u></p>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1.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 략)

2.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
교 학생

3.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
교 학부모

4.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교
육 관련 유관기관 대표, 교육
전문가 등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
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운영협의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
의 사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⑥ 위원장 3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
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서
장 및 미래교육 담당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
는 사람

3.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미
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
지구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때에는 위원장 2명 이상의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운영협의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및
실무 지원

3.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신 설>

<삭 제>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
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마포구 및 서부교육지원청의 혁
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 및 민
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실
무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마포구와 서부교육지
원청의 혁신교육 담당 공무원,
마포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혁
신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포구와 서부교육지원
청의 소관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삭 제>

② -----
----- 개회하고 -----.

<삭 제>

<삭 제>

제11조 (대외협력) 구청장은 미래 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기업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

----- 예산-----

----- . -

----- .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제5조(보조금의 지원)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나.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나.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수당 지급

4. 작성자: 복지동행국 교육정책과 정아영(☎ 3153-8682)